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11~111p 8~8줄	오타	이중으로 개 금결제에 대한 확약을 ~	이중으로 대 금결제에 대한 확약을 ~
114~114p 11~14줄	개념,공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UCP 600에서는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 Divisible, Fractional, Transmissible'도 모두 유효한 양도가 능 신용장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금지조항이 없는 한 분할양도도 가능하다(UCP 600 48조). 	삭제
127~127p 21~25줄 19번 항목	개념,공식-설명	<p>기존의 UCP 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이란 표현만이 신용장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할당 가능), 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l(분절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등의 표현도 모두 양도가능 신용장 표현으로 인정한 것이다.</p>	<p>기존의 UCP 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이란 표현만이 신용장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missible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시하였다.</p> <p>UCP 600에서는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Transferable"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이하 "제1 수익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이하 "제2 수익자"라 한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